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제8항(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1호	100	200	300

나. 법 제22조제1항(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1호	30	50	100
다. 법 제22조제2항(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2호	30	50	100
라.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1호	150	300	500
마.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3호	30	50	100
바.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2호	150	300	500
사. 법 제26조제5항 본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4호	30	50	100
아. 법 제26조제5항 단서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2호	100	200	300
자. 법 제27조제1항제3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3호	150	300	500
차. 법 제27조제1항제4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4호	150	300	500
카. 법 제27조제1항제4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3호	100	200	300
타. 법 제27조제1항제5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의 결과를 기록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3호	150	300	500

파. 법 제27조제2항제2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5호	150	300	500
하. 법 제27조제2항제3호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6호	150	300	500
거. 법 제28조(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7호	150	300	500
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(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8호	150	300	500
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(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	300	500	1,000
러. 법 제33조(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9호	150	300	500
머. 법 제33조(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4호	100	200	300
버.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	법 제62조 제3항 제1호	100	200	300
서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1호	30	50	100
어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2호	30	50	100
저. 법 제41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	법 제62조	150	300	500

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제2항제3호			
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	300	500	1,000
커.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5호	100	200	300
터. 법 제4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4항제4호	30	50	100
퍼. 법 제44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2호	100	200	300
허.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3호	150	300	500
고.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4호	150	300	500
노.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3호	100	200	300
도.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3호	150	300	500
로.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7호	150	300	500
모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8호	150	300	500
보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62조 제1항	300	500	1,000
소.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2항제9호	150	300	500
오.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2조 제3항제4호	100	200	300